

유가자유화 어떻게 볼 것인가



민병호

〈서울경제신문 산업1부 기자〉

우 리 속담에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는다」는 말이 있다. 올해부터 시작된 국내 정유 업계의 가격 자유화조치를 보고 있노라면 이 속담을 생각나게 한다.

어차피 발효식품에는 균들이 끓게 마련이고, 이 균들이 적당히 균형을 취하게 할 때 장 맛도 제맛이 나게 되는 것이다. 가격자유화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의 엄격한 통제를 받다 갑자기 시장기능에 맡겨놓을 경우 담합에 의한 값 상승이나 출혈경쟁과 같은 어느 정도의 부작용이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여기에는 그 부작용이 장맛을 벼려놓을 만큼 심각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그러나 올해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석유류의 가격 자유화 조치는 장은 담그되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부작용이 두려워

장을 담그기를 미루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생긴다. 한시적이긴 하지만, 가격 사전신고제 등을 통해 반쪽 짜리 자유화를 실시하고 있는 점이 몹시도 안쓰러워서 하는 말이다.

국내 유가자유화는 실시 한달을 넘기면서 국내 석유시장에는 적지 않은 변화가 찾아들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통제와 원유가 연동체를 축으로 「관리체제」하에 있던 정유시장은 이번 자유화를 계기로 자유화, 개방화를 위한 첫 발을 내디딘 것이다.

올해초 국내 정유산업 역사상 처음으로 「스스로」 결정된 휘발유 값은 전반적으로 8백50원대에서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길거리 주유소에는 종전에는 볼 수 없었던 커다란 가격표가 내걸려 자유화시대를 실감케 했다.

이런 모습은 가격자유화가 사회·경제적으로 커다

란 부작용을 동반할 것이라는 그동안의 우려를 말끔히 잊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그 공은 모두가 자유화 시행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발생 가능한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정부의 가격 사전 신고제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같은 제도적 안정장치는 유가 자유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주유소간 가격담합이나 과도한 값 인상 억제 등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가격 사전신고제를 도입했다. 그리고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일부 대리점의 값 인상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과 같은 엄포(?)를 놓음으로써 사실상 자유화에 제한을 가했던 것이다.

결국 지난해부터 요란을 떨었던 유가자유화는 아직은 반쪽짜리 자유화라는 평가절하를 면치 못하고 있다. 유가자유화는 정부와 정유업계의 잔치로 끝나고 일반소비자들은 유가자유화라는 용어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는 생각이다.

그 결과 가격자유화를 계기로 환차손과 원유도입비 상승 등으로 입은 손실을 보전해보고자 했던 정유업계의 꿈은 물거품이 됐다. 또 지역별, 대리점, 주유소별 석유류의 가격 차별화를 통해 시장점유율의 확대 등으로 도약을 꿈꾸었던 후발업체들의 꿈도 일단은 후일을 기약할 수 밖에 없게 됐다.

가격자유화의 정착을 가로막은 또 하나의 장애물은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정부의 고유가 정책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휘발유와 등·경유에 대해 교통세와 특소세를 20%씩 인상해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7백원선 이던 것을 8백원대로 올려 놓았다.

이처럼 높은 가격체계하에서는 주유소별 가격차별화를 실시할 경우에도 큰 효과가 없기 마련이다. 리터당 1백원이나 값이 오른 상태에서 적은 폭이라도 값을 올리게되면 그만큼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또 값을 소폭 내려봐도 별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가격 신고제와 고유가 정책이 정유시장의 시장기능 회복에 의해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가야할 혜택들을 앗아가 버린 셈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유가 자유화는 아직도 구더기(부작용)가 무서워 장을 담그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사실 가격 자유화 실시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여러 가지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가격담합이나 의식적인 동조행위, 부당염매행위,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부당 가격표시행위 등과 같은 갖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수도 있다.

반대로 업체간 치열한 가격경쟁을 벌임으로써 기업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심한 경우 기업이 도산하는 것과 같은 커다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보다 가격자유화를 먼저 실시한 외국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런 우려는 한마디로 「杞憂」라고 할 수 있다. 이미 가격담합이나 부당염매행위 등과 같은 판매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현행 공정거래법에도 금지와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가격 인하경쟁은 자유화가 실시되기도 전인 지난 94년도에도 이미 경험한 바 있다. 업계의 이런 경험은 가격자유화 후에도 많은 교훈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정유업의 특수성을 고려치 않고 모든 상품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을 그대로 석유류에 대해서도 적용하려하는 고정된 사고방식이 문제라고 생각된다. 가격자유화는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업계간 건전한 경쟁에 의해 소비자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있다.

석유류는 일반 상품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석유제품은 제조공정상 부가가치가 크지 않고 제품특성상 차별화가 어렵다. 또 원재료비의 구성비율이 높고 사별 원가구조 적용에 따른 가격차별화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석유시장의 가격자유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국내 정유산업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감시기능과 건전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의 특성에 맞는 원가 또는 가격 기준을 마련할 수도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많지 않은 업계 대표들이 모여서 업계에 맞는 룰을 만들 수도 있다고 본다.

업계 역시 가격자유화가 담합이나 과열경쟁을 통해 경쟁기업을 떠돌리는 「기회」로만 인식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동안 익숙해 있던 정부의 규제와 보호에서 벗어나 원유자급도의 향상, 물류설비의 구축 등과 같은 원가절감 노력과 함께 인력의 효율적인 운용, 과감한 경영혁신의 추진 등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이런 준비 보다도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시행 초기 문제점은 있겠지만 정부는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 진정한 유가 자유화를 실시하고 업계는 변화된 환경에 맞춰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자유화·개방화를 추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당면과제라고 생각된다. 구더기가 무서워도 장은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

일본 석유소식

일본, 연내 석유제품 수출 자유화

일본은 석유제품에 대한 수출규제를 철폐할 방침이다. 일본정부는 輸出貿易管理令에 근거하여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석유제품 수출을 제한해온 석유제품수출 승인제를 연내에 폐지하여 자유화하기로 했다. 금번 조치로 '96년 4월에 실시된 석유제품수입자유화에 이어 석유제품 무역에 관한 규제는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따라서 정유회사는 원유정제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유나 휘발유등 잉여제품을 처리하기가 용이해졌으며 정유공장의 가동률을 상승으로 코스트인하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한편 잉여석유제품 판매를 둘러싼 불투명한 상관행도 어느정도 시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제도에서는 석유제품을 수출할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승인요청을 받은 에너지청은 ① 국내 안정공급에 미치는 영향, ② 덤팡여부 ③ 상대국의 에너지정책에 지장초래 여부등을 심사하여 허가했다. 이 허가제로 인해 심사중 행정지도가 개입하게 되고, 석유제품의 수출을 실질적으로 막아왔다. 현재 일본의 원유처리능력은 일일 약 520만배럴에 달하고 있으나 생산된 대부분의 석유제품이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다.

작년 3월말 에너지청은 특정석유제품 잡정조치법을 폐지하여 석유제품 수입에 관한 규제를 자유화한데 이어 석유유통제도의 개혁을 위해 주유소 신규 등록시 공급원 증명제

도와 수출승인제 폐지를 급선무로 판단하고 '97년 1월말에 석유심의회(통상성 자문기구)에 검토를 요청했다.

수출을 자유화하면 석유회사는 석유제품의 잉여제품을 처리하기 쉽게되고, 이로인한 가동률을 상승으로 석유제품 가격도 인하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동안 통찰기의 수요 유종인 등유만을 증산하려해도 수요가 미미한 종유도 필요이상 생산되기 때문에 정유회사는 정유공장의 가동률로 조정하지 못하고 부족한 등유를 수입으로 충당해왔다. 〈일본경제신문, '97. 2. 17〉